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89

발의연월일: 2021. 5. 26.

발 의 자:김병욱・박성준・정성호

윤재갑 • 이상헌 • 김영호

이용빈 · 홍성국 · 서동용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불안하여 창업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옴.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그러나 현행 「상법」은 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필요함.

이에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실현가능성은 높이고자 함.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3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을 "제15조의11까지,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16조의12 및 제16조의13"으로 한 다.

법률 제1810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 3절에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로 결의해야 한다.

- 1. 창업 이후 3년이 지났을 것
- 2.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2.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 5.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자의 자격요건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제16조의9에 따라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1. 복수의결권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이 경우 양도일이나 상속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화된다.
 - 2. 복수의결권주식의 주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에서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 3.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전환하다.
 - ③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 9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 1.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2.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 3.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 5.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6.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 7.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 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 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13(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 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 -----제15조의11까지. 제16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 조의3, 제16조의9, 제16조의10, 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제16조의12 및 제16조의13----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 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 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 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104호 벤처기업육성에 법률 제1810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발 <신 설> 행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 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수가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결의해야 한다.

- 1. 창업 이후 3년이 지났을 것
 2.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 2.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 결권의 수
-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

<u>수</u>

- 5.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자의 자격요건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제16조의9에 따라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1. 복수의결권주식이 양도되거 나 상속된 경우. 이 경우 양 도일이나 상속일에 보통주식 으로 전환된다.
 - 2. 복수의결권주식의 주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 기업에서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 3.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당 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 ②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

우에는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전환한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 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의 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9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

2.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 3.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 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 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 항
- 4.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

 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 5.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 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u>6.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u>

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42조의12에 따 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3(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 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 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 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